

aT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침서

차 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공고)(신설, '24.3.14)

제2장 종합박람회

제5조(통합한국관 수요조사)

제6조(통합한국관 참여)

제7조(통합한국관 홍보관운영)

제8조(통합한국관 부스배정)

제9조(사전설명회)

제3장 개별박람회

제10조(참가대상)

제11조(선정규모)

제12조(개별박람회 참가·변경)

제4장 신청 및 선정

제13조(참가신청)

제14조(참가업체 심사 및 선정)

제15조(선정한도)

제16조(종합박람회 참가부담금 납부)

제17조(종합박람회 추가선정)

제5장 박람회 참가지원

제18조(참가업체 지원)

제19조(지원금 정산)

제6장 성과관리

제20조(성과측정과 포상)

제21조(현장점검)

제22조(참여업체 공통 준수사항)

제7장 참가업체 준수사항(개정, '24.11.13)

제23조(사업 참여 제한)

제24조(참가 포기)

제25조(참가포기 면책 사항)

부칙

제26조(기타)

별표

별표 1. aT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신청 확인서

별표 2. aT 국제식품박람회 개별박람회 선정업체 확인서

별표 3. 박람회 참가업체 청렴서약서

별표 4. 박람회 참가업체 선정 평가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침

[시행 : 2025.09.25.] [2025.09.25. (개정)]

제정 2013.10.24

제1차전부개정 2023.11.10.

제2차전부개정 2024.03.14.

제3차전부개정 2024.11.18.

제4차 일부개정 2025.04.01.

제5차 일부개정 2025.09.25.

해외사업처(바이어사업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추진하는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적용할 일반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이하 “aT” 라 한다)의 국제식품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이하 “박람회사업” 이라 한다)에 참가하는 수출업체,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람회사업” 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에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단체 참가하거나, 개별업체가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박람회에 대하여 국고보조를 통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한국관”은 유력 국제식품박람회에서의 국가 브랜드 홍보 효과 증진, 참가업체 및 바이어 혼란 방지, 개별참가에 따른 비효율적 예산집행 방지 등을 위하여 aT가 기업, 지자체, 유관기관 및 협·단체 등 참가수요를 모아 통합 임차, 장치, 홍보 등 총괄 운영하는 형태를 말한다.
3. “종합박람회”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에 aT가 주관하는 통합한국관 등을 구성하여 단체로 참가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4. “개별박람회”는 해외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에 aT가 주관하는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지 않고 개별업체 또는 협·단체가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5. “참여기관”은 해외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에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하여 aT가 주관하는 통합한국관을 통해 참가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협회·단체·법인 등을 말한다.
6. “참가업체”는 aT의 박람회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온라인박람회”는 전시주최사에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개최되는 식품박람회를 말한다.
8. “참가부담금”은 박람회 사업의 소요 비용중 참가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9. “참가 부류”란 동일 범주에 속하는 품목을 구분해 놓은 것이며 참가업체의 부류는 박람회 참가 신청 품목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제4조(공고) ① aT는 “박람회사업 모집공고”를 aT국제식품박람회 웹사이트(global.at.or.kr:8081, 이하 “박람회 웹사이트”라 한다)와 기타 홍보 매체를 활용해 공고한다.

② 모집공고는 상·하반기 연 2회 하며 예산·정책 방향의 변화 등으로 일정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공고를 할 수 있다.

제2장 종합박람회

제5조(통합한국관 수요조사) ① aT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기관·협회·단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aT가 운영하는 통합한국관 참가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② aT는 제1항의 수요조사를 통해 종합박람회 통합한국관 임차 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

제6조(통합한국관 참여) ① aT는 참가업체 외에 참여기관 수요를 종합해 통합한국관을 운영하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토록 한다.

1. aT는 통합한국관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등(이하 참여기관) 수요를 조사하고 참여기관은 참가 대상 박람회와 참가 희망 부스 수를 사전에 aT와 협의 후 문서로 통지한다.
 2. aT는 각 박람회 통합한국관 참여수요에 대한 공급 가능 부스 수량을 배정하여 각 참여기관에 회신한다.
 3. 이후 참여기관은 확정된 부스의 변경(참가 포기, 참가 규모 축소 등)이 필요한 경우 박람회 개최 3개월 전까지 aT에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4. 참여기관의 귀책 사유로 박람회 개최 전 3개월 이후 통합한국관 참가 포기, 참가 규모 축소, 전시장 노쇼(No-Show)가 발생했을 때 aT는 차년도 통합한국관 부스 배정시 해당 기관을 후 순위 배정할 수 있다.
 5. 참여기관에서는 박람회 개최 3개월 전까지 확정된 부스 수량에 따라 자체적으로 참가업체를 선정한 뒤 aT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6. 부스 위치는 동일 블록 내지 인접한 블록에 모든 참여기관 부스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공급 가능한 부스 수량이 부족할 경우, aT 부스와 인접하지 못한 위치로 배정할 수 있다.
 7. 장치디자인은 aT가 지정한 장치업체가 시공을 담당한다. 다만, 필요시 참여기관이 별도로 추가적인 장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참여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 ② aT는 통합한국관 임차·장치·운영 비용 등을 바탕으로 참여기관 분담금을 산정하여 통보하고 참여기관은 산정된 분담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aT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한국관 홍보관 운영) ① aT는 전략적 중요도가 높은 국가나 지역에서 개최되는 주요 식품박람회에 한국 농식품 인지도 제고를 위하여 통합한국관에 농식품 홍보 부스, 컨설팅 부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aT 수출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한국관에 수출지원사업의 사업홍보를 위한 홍보관 등을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통합한국관 부스배정) ① 통합한국관 내 부스배정은 1개 참가업체당 1부스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최대 4부스(36㎡)까지 배정할 수 있다.

1. 미개척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중견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2. 기타 aT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참가업체의 부스위치 배정은 참가업체가 직접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을 통한 추천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 추천 시 aT에서 지정한 사람이 추천을 진행하고 그 추천 결과를 공유하는 것으로 참가업체가 부스배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부스위치를 임의로 배정할 수 있다.

1. 참가기업 과반수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
2. aT 박람회 주관부서에서 운영하는 인포부스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한국 농식품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정책적 목적의 홍보관 부스의 경우
3. 지자체, 유관기관 등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한 개별업체 참가를 위해 다수의 부스를 배정받은 경우
4. 기타 정부 정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전설명회) ① aT는 박람회를 통한 참가업체 성과제고를 위해 사전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사전설명회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불가항력(천재지변, 테러, 화재, 전염병, 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 등)으로 사전설명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관련자료 배포 등으로 대체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③ 사전설명회는 참여기관 및 참가업체 출장예정자가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참가업체를 대표할 수 있는 자가 참석할 수 있다.

④ 참가업체의 귀책 사유로 사전설명회 불참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해당 참가 기관, 참가업체가 책임을 진다.

제3장 개별박람회

제10조(참가대상) 개별박람회는 aT 주관으로 통합한국관을 구성하여 참가하는 국제식품박람회를 제외한 박람회에 참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선정규모) 개별박람회에 선정된 업체의 박람회 참가 취소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모집규모를 초과하여 참가업체를 추가로 선정·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개별박람회 참가·변경) ① 개별박람회에 선정된 업체는 부스 임차, 장치, 비품, 전시품 운송, 홍보 및 관측물 준비 등 박람회 부스운영과 전시 상담에 필요한 절차를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반드시 사전에 박람회 개최 여부, 신청 기간 등 박람회 참가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② 개별박람회에 선정된 업체는 사전설명회 이후 한 달 이내에 붙임 양식에 따라 참가대상박람회 『세부참가계획(별표 6, 7)』과 『부스임차계약서』 및 『aT 국제식품박람회 개별박람회 선정업체 확인서(별표 2)』를 aT국제식품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23조제2항을 적용한다. 단, 주최측의 사정으로 해당 기일까지 부스임차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aT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선정된 개별박람회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박람회 취소 등의 주최측 사정이나 불가항력적 사항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최대 1회까지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개별박람회 선정된 협·단체의 변경은 해당 공고에서 최초 선정 조건(국가 또는 카테고리)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최초 선정 당시 지원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박람회 선정된 일반 기업의 변경은 최초 선정된 상·하반기 구분을 따라서 해당 공모에서 최초 선정된 국가의 박람회로만 변경할 수 있다.

④ 제4항에 따른 박람회 변경요인 발생 시 즉시 개별박람회 담당자에게 고지하고 aT 국제식품박람회 홈페이지 시스템을 통해 박람회 변경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승인 후 한 달 이내 또는 박람회 개최 전 한 달 이내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까지 제3항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신청 및 선정

제13조(참가신청) ① aT의 박람회사업에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모집공고에 따라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 회원가입 후 국제식품박람회 신청을 통해 반드시 온라인으로 접수해야 한다.

② 참가업체는 박람회 모집공고 기간 종료 전에는 참가신청 내용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단, 모집공고 기간 종료 후에는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없다.

③ 참가업체는 박람회사업을 통한 수출실적 조화에 필요한 무역통계제공 동의를 위해 무역통계진흥원에서 제공하는 무역통계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④ 참가업체는 aT가 위 제1항 각 호의 원본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즉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허위사실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aT는 제23조제2항에 따라 **사업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⑤ 참가업체는 원활한 박람회사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다.

제14조(참가업체 심사 및 선정) ① aT는 참가업체 품목 특성을 참고해 참가업체의 부류를 확정하고 박람회 개최 국가별 유망제품, 시장동향 등 고려해 박람회별 선정할 부류의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

② 제15조에 의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계량 및 비계량 평가와 가감점 기준에 따라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부류별 선정한도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평가결과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 계량·비계량 평가의 배점이 큰 항목 순으로 해당항목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한다.

③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은 aT 및 유관기관 등 농식품 수출전문가로 구성하고,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며 선정위원회 위원 명단, 위원별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단, 선정평가위원회 평가 시 신선농산물 등 농가소득 연계 부류와 박람회 개최국의 통관 및 현지시장여건·정부 정책방향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신청업체 중에서 박람회 참가목적에 적합한 업체가 없다고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할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⑤ aT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일부 계량평가 업무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5조(선정한도) ① 종합박람회는 참가업체 당 상·하반기 각 최대 2회, 연간 최대 4회까지 선정할 수 있으며, 지자체 등 참여기관에서 선정하는 횟수는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개별박람회는 참가업체 당 상·하반기 각 최대 2회, 연간 최대 4회까지 선정할 수 있으며, 협·단체 등 개별박람회 단체참가 기관에서 선정하는 횟수는 한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조(종합박람회 참가부담금 납부) ① 종합박람회 참가업체는 aT가 산정한 참가부담금을 박람회 참가 횟수에 따라 지정된 계좌에 반드시 참가업체 명의로 기한내 입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aT에서 지정하는 일시를 경과하여 입금하거나, 지정 일시까지 지정 계좌에 참가부담금을 입금하지 않은 참가업체는 박람회 선정에서 제외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지정 일시를 경과하여 입금한 참가부담금은 해당 업체에 반환한다.

③ 참가부담금 납부 이후 참가를 포기하거나 박람회에 자의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기납부한 참가부담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테러, 화재, 전염병, 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으로 박람회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해당 박람회 선정업체에 참가부담금을 반환한다.

제17조(종합박람회 추가선정) ① 종합박람회 선정업체의 참가 포기 또는 임차면적의 증감 등의 사유로 해당 박람회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개최 국가의 통관 및 현지 시장 여건·정부 정책 방향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참가 포기 업체와 동일한 부류의 차순위로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 부류 차순위 업체가 없거나 임차면적의 증감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평가 결과 고득점순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aT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박람회 참가업체가 참가부담금 납부를 불이행하여 해당 박람회 선정이 취소된 경우 동조 제1항에 따른다.

제5장 박람회 참가지원 및 정산

제18조(참가업체 지원) ① aT는 박람회사업 성과제고를 위하여 참가업체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별도 기준에 따른다.

② 지원항목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 제19조(지원금 정산)** ① 모든 지원금은 참가업체가 먼저 지출하고 박람회 종료 후 한 달 이내에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정산 요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② 외화 송금에 따른 환율은 증빙서류에 명기된 송금 환율로 하며, 명기되지 않았을 경우 현금 결제 시에는 지출일 기준 하나은행 최초고시 ‘현찰 살 때’, 송금 시에는 지출일 기준 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 보낼 때’ 환율을 적용한다. 이때 지출일이 주말 및 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의 환율을 적용한다.
- ③ 증빙 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
- ④ aT에서 승인한 지원금은 참가업체에서 제출한 통장사본을 기준으로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계좌로 지원금액을 입금하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의 계좌(회사명이 병기된 계좌)로 입금한다.
- ⑤ 총 지원금액은 지원한도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받는 금액은 제외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무관서가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와, 개별박람회 참가업체가 결과보고서 제출 시 미환급 서약서를 같이 제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⑥ 모든 지출 증빙자료는 참가업체 명의로 지출(송금)된 것만 인정한다. 현지 법인 또는 국내외 협력업체 등의 대납은 증빙자료로 인정되지 않는다.

제6장 성과관리

- 제20조(성과측정과 포상)** ① aT는 박람회 사업 참여기관 및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 ② 참여기관 및 참가업체는 aT가 공정한 성과측정을 위해 선정된 외부 전문기관에의 자료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성과측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거나 성과 결과가 우수 참가업체는 차기 박람회 선정평가 시 우대할 수 있다.
- ④ 그 외 aT는 국제식품박람회 지원 사업 발전에 기여하거나 우리 농식품 수출 촉진에 있어 우수한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현장점검) ① aT는 박람회 참가업체의 전시상담 점검을 위해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는 aT 점검직원의 현지점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aT 직원은 현장에서 참가업체의 부적절한 박람회 운영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참가업체가 정당한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T는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할 수 있다.

③ aT의 ‘경고’ 조치에도 시정하지 않거나 유사사례가 재발한 경우 ‘제23조(사업 참여 제한)’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7장 참가업체 준수사항

제22조(참여업체 공통 준수 사항) ① 통합한국관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업체는 「국제 식품박람회 참가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박람회 참가 신청 및 박람회 부스 간판 등은 반드시 참가업체명 또는 해당 업체 대표 브랜드(제품)명으로 표기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선정업체명이 아닌 대표 브랜드 또는 제품명으로 부스 참가 및 디렉토리 등재 시 반드시 관련 증빙자료(상표등록증, 상표 사용 계약서 등)를 박람회 장치 공사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박람회 운영은 참가업체의 직접 참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불가항력(천재지변, 테러, 화재, 전염병, 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 등)으로 박람회 개최지 출입국에 제한이 있는 경우 현지 파트너사 참가, 대행인력(MD)을 활용한 참가가 가능하다. 이 경우 현지 파트너사 또는 대행인력(MD)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참가업체에서 부담한다.

④ 박람회별 통합한국관 모든 참가업체의 정보가 담긴 디렉토리는 aT에서 aT 수출 홍보사이트 (www.k-foodtrade.or.kr)상에 온라인으로 구현하며 참가업체는 이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⑤ 참여기관 및 참가업체 등 모든 박람회 현장 출장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비상 연락망 제작에 필요한 정보를 박람회 개최일로부터 2주 전까지 aT에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 참여 제한) ① aT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가기관 또는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사유 발생 즉시 당해연도 잔여 박람회 취소 및 향후 3년간 박람회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1. 박람회 사업 목적 외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2. 동일 박람회에서 동일한 항목에 대해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받은 경우
3. 참가업체가 aT로 제출한 서류의 위변조 또는 허위 보고
4. 기타 aT가 인정하는 사항

② 박람회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참가업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종합박람회, 개별박람회 참가를 구분하여 당해 연도 잔여 박람회 참가 취소, 차년도 박람회에서도 선정 제외를 할 수 있다.

1. 당해 참가업체가 박람회 사전설명회 개최 후 참가를 포기하는 경우
2. 당해 참가업체가 선정된 박람회에 노쇼(No show) 하는 경우
3. 박람회 현장에서 불성실한 부스 운영, 상담일지의 미제출 등 원활한 한국관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한 aT 운영요원의 현장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4. 기타 참가업체의 귀책 사유로 인해 aT가 금전적인 피해를 본 경우

③ aT는 다수 업체의 박람회 참가 기회 제공 확대를 위해 동일한 박람회에 동일한 참여 업체가 3년간 연속 참가할 경우, 그 차년도 동일박람회에 대하여 참가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단, 3년간 연속 참가 시 지원 제한의 적용은 2019년 종합박람회부터 시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aT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별박람회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전 설명회 개최 한 달 경과 후에도 참가계획이 미확정 상태, 즉『세부참가계획』과『부스임차계약서』를 미제출한 경우
2. 박람회 종료일 또는 선정발표 이후 aT에서 지정한 정산 요청일 기준 4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미제출한 경우(증빙서류는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
3. 예산집행 등 사업 진행 확인과 관련하여 aT의 요청사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경우
4. 박람회 변경요인 발생일로부터 한 달 이내, 박람회 변경신청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⑤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법률을 위반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조치한다.

제24조(참가포기) 선정된 참가업체의 박람회 사업 포기는 참가 취소 공문을 첨부하여 박람회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며 자부담금은 환불이 불가하다.

제25조(참가포기 면책사항) ① aT를 통해 선정된 박람회 참가업체가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포기에 대한 패널티를 부여하지 않고 면책할 수 있다.

1. 불가항력 사항(천재지변, 테러, 화재, 전염병, 한국 및 참가국 정부의 조치 등)
2. 참가업체 자책 사항이 아닌 검역상 금지 또는 전시품 통관이 불가한 경우
3. 박람회 주최사의 박람회 일정 변경으로 해당 참가업체 참석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aT가 인정하는 사항

② 참가업체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관련 증빙 등을 첨부하여 aT에 참가포기 면책에 대한 소명을 하여야 한다.

③ aT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해당 박람회에 참가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 집행된 참가비, 운반보관료 등 지원 항목에 대해 내부 검토 후 참가기업 부담금을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26조(기타) ①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또는 aT가 별도로 제시하는 조치에 따른다.

② aT는 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업체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부칙 (2023. 11. 10) 이 지침은 2023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상반기 박람회 선정업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3. 14) 이 지침은 2024년 3월 14일부터 시행하되 2024년 하반기 박람회 선정업체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11.18.) 이 지침은 202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상반기 박람회

선정업체부터 적용한다.

- 윤리경영을 위한 우리의 신조 -

우리는 열린사회의 일원으로서 윤리적 가치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경영”을 실천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을 구현한다.

하나. 우리는 항상 ‘고객이 우선이다’라는 신념으로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한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한다.

하나. 우리는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적 기업시민으로서 현지국의 경제발전에 공헌한다.

하나. 우리는 유관기관 및 단체와 상호협력하고
지역사회와의 공생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하나. 우리는 항상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동하며,
올바른 근무자세를 견지하여 모범적인 수출인의 표상이 된다.

하나. 우리는 국제거래에 있어서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 등
투자과 거래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제 규정을 준수한다.

하나. 국제연합(UN)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의
10대 원칙을 지지하고 준수한다.